

정부혁신 보다나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19. 5. 29.(수) 총 5매(본문 2, 참고 3)	
담당 부서	수산자원정책과	담당 자	• 과장 김영신, 사무관 서민혜, 주무관 이문향 • ☎ (044) 200-5530, 5540, 5541	
	국립수산물과학원 연근해자원과	담당 자	• 과장 차형기, 연구관 김영혜, 연구사 권대현 • ☎ (051) 720-2270, 2291, 2295	
보도일시		2019년 5월 30일(목) 식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30.(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6월부터는 대게와 꽃게를 지켜주세요!

- 대게는 11월 30일까지, 꽃게는 8월 20일까지 금어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에 대게와 꽃게를 비롯한 5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6월에 시행되는 금어기>

대게	6. 1.~11. 30.	참홍어	6. 1.~7. 15.
꽃게	6. 21.~8. 20. (서해5도 일부해역 7. 1.~8. 31.)	펼 닻새우	6. 1.~8. 31.
낙지	6. 1.~6. 30.(인천·전남·경기 6. 21.~7. 20. / 충남 4. 1.~5. 31. / 경남 6. 16.~7. 31.)		

대게 금어기는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되었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울진 왕돌초 주변의 '산란기 암컷 집중 서식해역'을 조업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대게는 다리가 대나무 마디와 닮았다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부드럽고 담백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수산물이다. 대게는 동해안의 특산물로 우리나라 동해바다의 수심 100~500m 해역에 분포하며, 최대 수명은 17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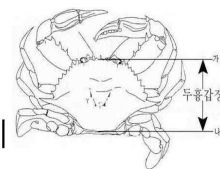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며,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이다. 성숙한 암컷은 최대 20만 개의 알을 품고 있으며,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일정기간 동안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의 수심 200~400m 해역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시킨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도에 처음 설정되었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 연평도 주변,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

꽃게는 다른 게들과는 달리 해염에 능숙하여, 서양에서는 ‘수영게 (swimming crab)’로 불린다고 한다. 수심 2~100m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서 서식하며, 수명은 3년이다. 겨울철에는 수심이 깊은 곳이나 먼 바다로 이동하여 겨울잠을 잔다. 꽃게의 산란기는 5~9월이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두흉갑장* 길이가 6.4cm 이상 성장하면 산란이 가능하며, 연간 3~4회 산란을 한다.



* 꽃게의 두흉갑장: 머리·가슴에 있는 껍데기의 길이

이 외에 참홍어, 낙지, 필답새우도 6월 1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대게, 꽃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하여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참고 1

대게와 꽃게 포획금지규정



대게



꽃게



대게 수컷 사진



대게 암컷 사진



꽃게



위판용 꽃게

□ 포획·채취 금지 기간(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1항)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대게류(붉은 대게는 제외한다)	<i>Chionoecetes</i> spp.	1)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동경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북위38도34분09.68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 북위38도34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주5) 및 주6)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5)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48분 나.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51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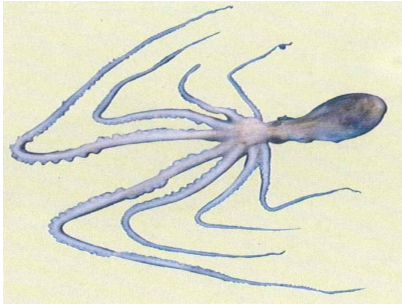
		다.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48분 라.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51분 주6)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48분 나.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48분 라.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51분
꽃게	<i>Portunus trituberculatus</i>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어획량의 5퍼센트 이상 포획·채취하 지 않는 경우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 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 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및 근해안강 망어업은 제외한다. (해양수산부 고시: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다만, 「어선안전조업규정」 제5조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 지의 연평도 주변어장, 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 및 같은 규정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서해 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과 기간’ 제1호 가목의 대청도 어선 어업구역에 대해 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2항)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대게	<i>Chionoecetes opilio</i>	9센티미터 이하
꽃게	<i>Portunus trituberculatus</i>	6.4센티미터 이하

참고 2

참홍어, 낙지, 펼닭새우 포획금지규정

		
참홍어	낙지	펼닭새우

□ 포획·채취 금지 기간(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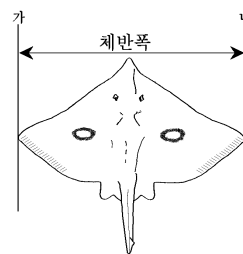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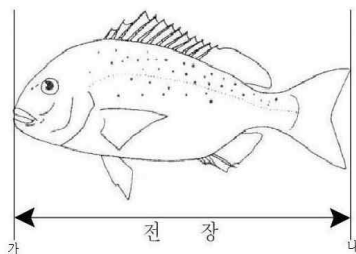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참홍어	<i>Raja pulchra</i>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낙지	<i>Octopus minor</i>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시·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지자체별 고시: 인천·전남·경기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충남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남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펼닭새우	<i>Linuparus trigonus</i>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2항)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참홍어	<i>Raja pulchra</i>	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
펼닭새우	<i>Linuparus trigonus</i>	10센티미터 이하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측정도

[어 류]



[갑 각 류]

